

「2017년도 생산현장 핵심기술 체계화 사업(기술전수)」 참여기업 모집 공고

중소기업 기술혁신기반 조성을 위한 「2017년도 생산현장 핵심 기술 체계화 사업(기술전수)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, 중소기업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.

2017년 4월 13일
중 소 기 업 청 장

1 사업 개요

사업 목적

- 중소기업 숙련기술인이 보유한 핵심기술을 사내 기술인력에게 전수할 수 있는 체계를 지원하여 기업의 생산성 및 역량 향상을 도모

지원 규모 : 총 80개사

2 신청 자격 및 제외 대상

신청 자격

-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 중 **제조업**에 해당하는 기업

* 지원제외대상 : ① 불건전 영상게임기 제조업, 도박게임장비 등 불건전 오락용품 제조업, ② 부채비율 1,000% 이상 기업(단, 업력 3년 미만 제외)

< 지원 대상 업종 >

No	업종 (제조업)	No	업종 (제조업)
1	■ 식료품 제조업	13	■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 제조업
2	■ 음료 제조업	14	■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
3	■ 담배 제조업	15	■ 1차 금속 제조업
4	■ 섬유제품 제조업(의복 제외)	16	■ 금속가공제품 제조업(기계 및 가구 제외)
5	■ 의복, 의복액세서리 및 오피제품 제조업	17	■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,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
6	■ 가죽, 가방 및 신발 제조업	18	■ 의료, 정밀,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
7	■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(가구 제외)	19	■ 전기장비 제조업
8	■ 펄프,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	20	■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
9	■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	21	■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
10	■ 코크스,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	22	■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
11	■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(의약품 제외)	23	■ 가구제조업
12	■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	24	■ 기타 제품 제조업

제외 대상

- 사업 신청 시 동 사업을 수행중이거나 신청하고자 하는 사업내용이 지원받은 내용과 유사·중복으로 판명된 경우
- 신청기업의 사업목적이 동 사업의 추진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
- 신청기업이 부도 또는 휴·폐업중인 경우
- 신청기업 및 대표자가 정부시행 사업의 제재대상자인 경우
- 신청기업의 부채비율이 1,000% 이상인 경우 (업력 3년 미만 기업은 제외)
- 신청기업이 허위로 계획서를 작성하거나 미제출한 경우
- 국세, 지방세 체납, 금융 불량 거래처로 규제 중인 경우
- 기타 중소기업청장이 참여제한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

3 지원 내용

지원 내용

- (현장진단 및 목표설정) 지원기업의 현장훈련 체계 및 기술전수 수준 등 현장진단을 통해 개선방향을 도출하고 성과목표 설정
- (기술전수 지침서 제작) 숙련기술인이 보유하고 있는 핵심기술 및 노하우를 문서화(문서·영상 등)하여 기술지침서로 제작 지원
- (기술자산화) 제작된 기술지침서의 기술임치를 지원하여 사업 성과물(산출물)을 기업의 기술자산으로 보호

지원 조건

- 전수체계 소요비용 지원(정부지원 70%, 기업부담 30%)

사업비 (수행기관 지급)	정부지원금	기업부담금	
13백만원 (1개 기업 당)	9.1백만원 (사업비 70%)	3.9백만원 (사업비 30%)	
		현금 1.3백만원 (사업비 10%)	현물 2.6백만원 (사업비 20%)

선정 절차



우대가점 (최대 5점까지 인정)

해당 내용	우대 가점
기술혁신형(INNO-BIZ)기업, 경영혁신형(MAIN-BIZ)기업, 벤처기업, 여성기업, 장애인 기업	가점 3점 (중복가점 없음)
경영혁신마일리지 500점당 가점 1점	최대 2점

4 신청·접수

신청 기간 : 2017. 4. 13(목) ~ 2017. 4. 27(목), 15일간

* 마감일(17:00) 까지 온라인 제출을 완료한 기업에 한하여 인정

신청 방법 : 생산현장 핵심기술 체계화 사업관리시스템을 통한 사업계획서 온라인 신청·접수

☞ 사업관리시스템(<http://www.innoskill.or.kr>) → 로그인 → 참가신청 → 신청서 작성(온라인 내용입력 및 과제유형 선택, 구비서류 등록) → 제출

선정 및 협약체결

-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최종 지원기업 총 80개사 선정
- 주관기관, 지원기업, 수행기관 간 3자 협약체결

5 문의처

이노비즈협회((사)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) 전략사업실

(전화) 031-628-9644

(팩스) 031-628-9611

(주소)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로 255 판교이노밸리 E동 202



중소기업청